**특허무상양도신청서**

<붙임 1>의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무상양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이사)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  |  |
| --- | --- | --- |
| **신청****업체** **개요** | \*업체명(법인명) |  |
| \*대표자 성명 |  | 법인여부 | 법인/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체규모 | 중소(벤처포함) |
| \*사업의 종류 | 업태 |  | 종목 |  |
| \*사업장 주소 |  |
| 홈페이지 URL | http:// |
| 구 분 | 자산총액(백만원) | 자기자본(백만원) | 총매출액(백만원) | 영업이익(백만원) | 종업원수(명) | 수출액(천불) |
| 2016년 |  |  |  |  |  |  |
| 2015년 |  |  |  |  |  |  |
| 2014년 |  |  |  |  |  |  |
| **연구****개발****현황** | 연구개발조직 |  |
| 연 구 인 력 | 명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
| 주요연구시설(보유현황) |  | 연구 총예산 | 2016 | 백만원 |
| 2015 | 백만원 |
| 산업재산권 현황 | 특허 건, 실용신안 건, 프로그램 건, 기타( )  |
| 연구개발실적 | 개발과제내용 | 개발기간 | 소요자금 | 사업화현황 |
|  |  |  |  |
|  |  |  |  |
| **실무자****인적****사항** | 성명 | 소속/직위 | 연 락 주 소 (사업장주소와 동일시 미기입) |
|  |  |  |
| TEL |  | FAX |  | E-mail |  |
| **우대****사항**  | 1. 특허의 발명자 ( )  | 2. 매출정률기술료 실적기업 ( )  | 3. ETRI 선정 집중지원기업 ( ) |
| 4. 연구소 기업 ( ) | 5. 무상양도 활용실적 기업 ( )  | 6. 우대사항 해당없음 ( )  |

**\*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상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작성함**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 3. 신청인 동의서 / 4.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 실적확인서 / 5.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

**<붙임 1> 무상양도 특허신청 리스트**

1. **업체명** :
2. **신청 특허 리스트**

|  |  |  |  |  |
| --- | --- | --- | --- | --- |
| **연번** | **특허등록번호** | **발명의 명칭** | **가중치** | **우대유형 1** **(가중치 2,000 인정)**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합계** |  |  | **1,000** |  |

|  |
| --- |
| **양수기업 선정기준** |
| ① 원칙: 특허별 『최대 가중치』 제안기업 선정 - 기업당 가중치 1,000을 부여하고,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가중치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선정된 기업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이 특허를 공유 ♠ 신청건수는 기업당 최대 7건으로 제한② 우대유형 1- 기업의 대표가 본인이 발명한 특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2,000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 주발명자가 아닌 발명자의 『우대유형 1』에 의한 특허양수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③ 우대유형 2-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치 1,000을 추가로 부여1) 2014년 이후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상용화하여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 \*공공부문: 국공립 연구소,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소, 대학2) ETRI에서 강견기업육성을 위해 별도절차를 통해 선정한 집중지원기업3) 『국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소 기업4) ETRI에서 2016년까지 추진한 특허무상나눔에 따라 양수한 무상양도특허를 활용하여 사업화실적(매출 50억원 이상)을 발생시킨 기업 ④ 중복적용 불가- 우대유형 1, 우대유형 2의 각 세부 항목 중 한가지만 적용 가능  |

|  |
| --- |
| **양수기업 선정절차** |
| ① 서류심사(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 등)를 통한 양수기업 적격여부 심사② 위 ①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가장 큰 가중치를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③ 위 ②에서 선정된 기업이 2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기업들을 공동 양수기업으로 선정(특허 공동소유)④ 양수기업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으나, 1건의 특허도 양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후, 잔여 특허 대상으로 동일 기준의 선정절차 반복하여 추가 양수기회 제공 ※ 신청서에 기재한 가중치의 총합이 작성요령의 기준과 다른 경우, 정해진 총합으로 환산하여 심사함- 예 1 : 가중치 총합이 1,000에 미달한 경우, 1,000으로 환산하여 심사- 예 2 : 상용화 성공실적 우수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중치 총합을 2,000으로 기재한 경우, 1,000으로 환산하여 심사  |

|  |
| --- |
| **작성 방법**  |
| 1. 신청기업은 무상양도를 희망하는 특허의 『특허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및 『가중치』를 기재하고, 『우대유형 1』의 해당여부를 체크함. - 신청기업에 부여된 『가중치』의 총합은 1,000(단, 『우대유형 2』 적용 기업의 총합은 2,000)이며, 신청기업은무상양도를 희망하는 특허의 우선순위(선호도)에 따라 부여된 『가중치』의 총합의 범위 내에서 특허마다 『가중치』를 배분하여 기재♣ 『가중치』는 ‘1’단위로 기재 가능2. 신청기업은 신청한 특허가 『우대유형 1』에 해당하면, 『우대유형 1』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음. -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1’ 이상의 『가중치』는 기재해야 하며,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특허에 기재한 『가중치』도 신청기업에 부여된 『가중치』의 총합에 산입됨♣ 『우대유형 1』에 해당하는 특허는 신청기업이 기재한 가중치와 무관하게 가중치 2,000으로 인정됨 |

**<붙임 2>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

**업체명** :

**특허명칭:**

**특허등록번호 :**

|  |  |
| --- | --- |
| **특허****활용****계획** | **※ 신청특허들에 대한 활용 계획** |
| **상용화추진****계획** | **※ 신청특허들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 사업화 계획** |

\* 둘 이상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각 특허마다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서’를 작성(1쪽 내외)

**<붙임 3>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1.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신청특허의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및 특허 유지와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권리이전에 따른 특허청 관납료 및 이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등을 포함함)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신청인은 양수기업으로 선정 시, 무상양도에 따른 **권리이전 업무를 양도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대리인 수수료는 건당 약 10만원 이내에서 결정예정).

2017 년 월 일

신청기업:

신 청 자(대표이사): (인)

**<붙임 4>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매출정률 기술료 납부실적 확인서[[1]](#footnote-1)**

아래의 납부기업이 본 기관에 아래와 같이 매출정률 기술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확인기관 (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귀하**

|  |  |  |
| --- | --- | --- |
| **기술료** **납부기업 개요** | 기업명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장 주소 |  |
| **매출정률기술료[[2]](#footnote-2)** **납부실적** | 기술료 납부대상기술또는 특허 |  |  |  |
| 납부기간[[3]](#footnote-3)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납부금액 | 원 | 원 | 원 |
| **납부실적 확인기관[[4]](#footnote-4)**  | 기관명 |  |
| 담당자 소속/직위/성명 |  |
| 전화번호 |  | E-mail |  |

**<붙임 5> 무상양도특허 적용 제품 설명서(해당 기업에 한함)**

**특허명칭 :**

**특허등록번호 :**

**양수연도 :**

**제품명 : ※ 양수특허가 적용된 제품은 모두 기재**

|  |  |
| --- | --- |
| **특허****요지**  | **※ 양수특허의 기술적 특징 설명**  |
| **제품****특징** | **※ 판매제품의 특징 설명** |
| **특허****적용****부분** | **※ 판매제품에서 양수특허가 적용된 부분에 대한 설명**  |
| **관련****매출** | **※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연도별, 지역별, 제품별 매출 현황(제품 판매량, 제품 가격, 제품 판매 방법) 기재** **- 제품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재(예,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판매 사이트)****- 기타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재**  |

1. 본 확인서는 2017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 무상양도 우대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것임. [↑](#footnote-ref-1)
2. 순수한 매출정률 기술료만 기재하며, 착수기본료, 정액기술료의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실적은 제외함. [↑](#footnote-ref-2)
3. 2014년 1월 1일 이후 실적만 기재함. [↑](#footnote-ref-3)
4. 실적 확인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를 적용 받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한함. [↑](#footnote-ref-4)